



개인정보보호법



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

믿을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, 신뢰사회의 기본입니다
Privacy by Trust, Trust by Privac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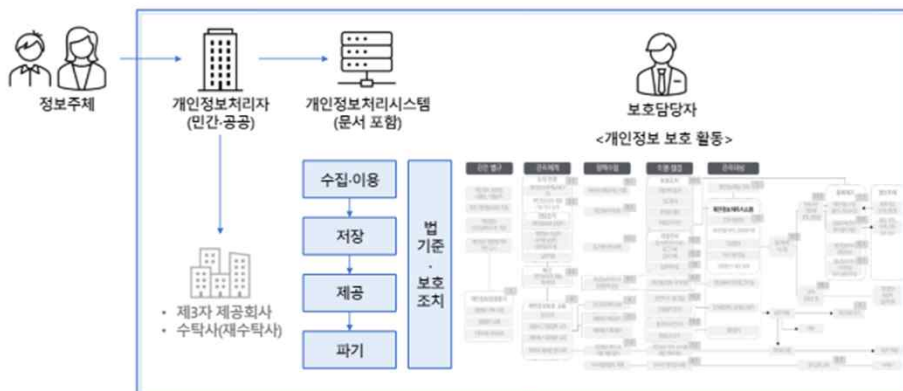


개인정보보호법

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

0. 교육 전 참고사항

▣ 개인정보, 이해관계자, 개인정보 보호법





개인정보보호법

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

1.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

개인정보란? (제2조)

<그 자체의 식별 가능성>

- 가명처리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

가명정보

'살아있는' 개인에 관한 정보

<정보가 지칭하는 대상>

-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
- 국적이니 신분에 관계없이 법 적용대상 (Ex. 외국인, 피의자 정보)

<타 정보의 결합을 통한 식별 가능성>

-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

일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

<정보가 지칭하는 대상>

-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 없음
- 단, 연관성에 따라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(Ex. 대표자 성명, 담당자 전화번호)

<정보를 통한 식별 가능성>

- 해당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 (c.f. 고유식별정보, 주민등록번호)

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함

정보의 내용·형태 등은 제한이 없음

<정보의 형태>

- 전자, 수기 등 형태와 처리방식은 무관
- 주관적 평가, 허위정보라도 해당될 수 있음 (Ex. 평가표, 여론)



개인정보보호법

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

1.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

개인정보의 예시

구분	구분	내용
인적사항	일반정보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생년월일, 출생지, 성별 등
	가족정보	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
신체적 정보	신체정보	얼굴, 홍채, 음성, 유전자 정보, 지문, 키, 몸무게 등
	의료·건강 정보	건강상태, 진료기록, 신체장애, 장애등급, 병력, 혈액형, IQ, 약물테스트 등의 신체검사 정보 등
정신적 정보	기호·성향 정보	도서·비디오 등 대여기록, 참가구독정보, 유통구매내역,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
	내면의 비밀 정보	사상, 신조, 종교, 가치관, 정당·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
사회적 정보	교육정보	학력, 성적, 출석상황,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, 상벌기록, 생활기록부, 건강기록부 등
	병역정보	병역여부, 군번 및 계급, 제대유형, 군무부대, 주특기 등
	근로정보	직장, 고용주, 근무처, 근로경력, 상벌기록, 직무병기기록 등
재산적 정보	법정정보	전과·범죄 기록, 재판 기록, 과태료 납부내역 등
	소득정보	등급액, 보너스 및 수수료, 이자소득, 사업소득 등
	신용정보	대출 및 담보설정 내역, 신용카드번호, 통장계좌번호, 신용평가 정보 등
부동산정보	소유주택, 토지, 자동차, 기타소유자형, 상점 및 건물 등	



개인정보보호법

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

1.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

▣ 개인정보 보호 원칙(제3조)

- 1 처리 목적의 명확화,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 수집
- 2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, 목적 외 활용 금지
- 3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·완전성·최신성 보장
- 4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
- 5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, 정보주체의 권리보장
- 6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
- 7 가명/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가명/익명으로 처리
- 8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, 정보주체의 신뢰성 확보

12



개인정보보호법

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

1.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

▣ 정보주체의 권리(제4조)

-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, 동의 범위 등을 선택, 결정할 권리
-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,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(사본 발급 포함)
-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, 정정·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
-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한 피해를 신속,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
-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

개인정보 자기결정권 >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, 어떻게, 어느 범위까지 수집, 이용, 공개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, 결정할 수 있는 권리

13



개인정보보호법

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

1.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

타 법률과의 관계(제6조)

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일반법

- ✓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
- ✓ 모든 공공기관, 사업자, 법인, 단체, 개인 등

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- ✓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
 ※ 위치정보법, 신용정보법, 전자금융거래법, 의료법 등



개인정보보호법

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

3. 개인정보의 처리

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시 점검사항

작성 전 확인사항


No.	확인사항	고려사항
1	업무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확인	최소한의 개인정보, 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
2	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	동의 필요 여부의 확인
3	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확인	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확인
4	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확인	제3자 제공 여부, 동의 필요 여부 확인 필요
5	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여부 확인	위탁사실, 위탁내용, 수탁자 등의 처리방침 게시 연계
6	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·제공 여부 확인	동의받은 사항의 변경, 별도 동의 필요 여부 확인
7	동의 거부 시 불이익 확인	불이익 범위 여부의 확인

동의 후 조치사항

No.	확인사항	고려사항
1	동의 의사 확인	동의받은 사실의 입증
2	동의 입증	
3	필수 선택항목의 구분	특례조항

자동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동의 필요 예

- ✓ 자동수집장치에 의해 수집하는 경우라도 서비스 제공계약 이행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이용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선택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동의 필요
- ✓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행태정보를 개인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



개인정보보호법

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

5.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피해구제

▣ 정보주체의 권리(제4조)

▶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

※ 시행일: 2024. 3. 15

1.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2.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,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
3.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(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**전송을 요구할 권리**
4.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, 정정·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
5.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
6. **[신설]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**

70



개인정보보호법

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

5.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피해구제

▣ 개인정보 피해구제 제도 현황

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	개인정보분쟁조정	민사소송
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제도개선권고 ▪ 행정처분 의뢰 ▪ 수사 의뢰 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제도개선권고 ▪ 손해배상 권고 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손해배상 청구
관련근거 (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)	관련근거 (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)	관련근거 (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)

77



개인정보보호법

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

5.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피해구제

손해배상제도

▶ 징벌적 손해배상제도(제39조)와 법정 손해배상제도(제39조의2)

구분	징벌적 손해배상제도	법적 손해배상제도
적용 요건	✓ 처리자의 고의·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의 없이 활용하여 피해 발생	✓ 처리자의 고의·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
입증 책임	✓ 처리자가 고의·중과실 없음을 입증 ✓ 피해액은 피해자가 입증	✓ 처리자가 고의·과실 없음을 입증 ✓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입증책임 면제
구제 범위	✓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모두 포함	✓ 사실상 피해 입증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
배상 규모	✓ 실제 피해액의 5배 이내 배상	✓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
적용 시기	2016년 7월 25일 이후 유출사고	

